KB스타 전세자금대출(HUG_주택도시보증공사)

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으로 전세계약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,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상품



대출자격

-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1년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서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
 - (1)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(단독세대주 포 ϕ)
 - (2)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, 그 외 지역 5억원 이내로 임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계약자
 - (3) 주택도시보증공사의 「전세보증금반환보증」과 「전세 자금대출특약보증」가입이 가능한 고객
 - (4)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보유수* 가 1주택 이내인 고객
 - 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7.10. 이후 취득(상속 제외)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취득시점 3억원주3)을 초과하는 아파트(이하 "규제대상아파트"라 함) 취득자에 대한 실수요 예외 인정 없음
 - (5)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(가) 재직사실 확인 및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
 - (나)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 증(연말정산용)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
 - (다) 무소득자(무직자)
 - (6) 본인 소득만으로 대출한도 부여가 가능한 고객 (배우자 소득합산 불가)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(1) 당행 상환조건부를 제외한 모든 조건부 대출(예: 타행 상환조건부, 임차목적물 선순위 말소조건부 등)
 - (2)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 대리에 의한 계약인 경우
 - (3) 공동임차인이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하는 경우
 - (4) 대상 목적물의 소유자가 신탁사인 경우
 - (5) 임차목적물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중 공사가 선정한 감 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대출 신청인에게 제출받아 주 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
 - (6) 채권양도통지 外 방식으로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 우
 - (7) 본 건 이외 진행중인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
 - (8) 배우자가 분양권(입주권)을 보유한 경우
 - (9) 외국인 및 재외국민
 - (10) 당행 임직원
 - (11) CSS 10등급 이하인 자
 - (12) 신용관리대상자 및 당행/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
 - (13)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말소 이력(거주 불명등록)이 존재하는 자
 - (14)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3회 이상 전출 이력 이 있는 경우 (단, 최근 1년 이상 재직이 증빙되는 근로소득 자 및 3년 이상 소득이 증빙되는 사업자는 예외)

대출한도

-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4억원(1주택 보유자는 최대 2억원) 이하로 아래 (1) ~ (3) 중 적은 금액 이내
 - (1) 임차보증금액의 80%
 - (2)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%
 - (3) KB손해보험의 NICE 및 KCB 점수에 따른 인수기준 ※ 단,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 능금액에 따름

대출기간

- 대출기간: 10개월이상 25개월이내(단, MOR 연동 24개월의 경우 최저 13개월 이상)
 - 대출만기일: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(임대 차계약기간은 1년 이상 필수)
 - 상환방법: 만기일시상환

전세자금대출 | 스타뱅킹신청

상품안내

상품특징

주택도시보증공사의「전세보증금반환보증」과「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」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

대출신청자격

-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1년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서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
 - (1)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(단독세대주 포함)
 - (2)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, 그 외 지역 5억원 이내로 임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계약자
 - (3) 주택도시보증공사의「전세보증금반환보증」과「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」가입이 가능한 고객
 - (4)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보유수*가 1주택 이내인 고객
 - 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7.10. 이후 취득(상속 제외)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취득시점 3억원주3)을 초과하는 아파트(이하 "규제대상아파트"라 함) 취득자에 대한 실수요 예외 인정 없음
 - (5)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(가) 재직사실 확인 및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
 - (나)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
 - (다) 무소득자(무직자)
 - (6) 본인 소득만으로 대출한도 부여가 가능한 고객 (배우자 소득합산 불가)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(1) 당행 상환조건부를 제외한 모든 조건부 대출(예: 타행 상환조건부, 임차목적물 선순위 말소조건부 등)
 - (2)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 대리에 의한 계약인 경우
 - (3) 공동임차인이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하는 경우
 - (4) 대상 목적물의 소유자가 신탁사인 경우
 - (5) 임차목적물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중 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대출 신청인에게 제출받아 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
 - (6) 채권양도통지 外 방식으로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
 - (7) 본 건 이외 진행중인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
 - (8) 배우자가 분양권(입주권)을 보유한 경우
 - (9) 외국인 및 재외국민
 - (10) 당행 임직원
 - (11) CSS 10등급 이하인 자
 - (12) 신용관리대상자 및 당행/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
 - (13)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말소 이력(거주불명등록)이 존재하는 자

(14)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3회 이상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 (단, 최근 1년 이상 재직이 증빙되는 근로소득자 및 3년 이상 소득이 증빙되는 사업자는 예외)

대출금액

-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4억원(1주택 보유자는 최대 2억원) 이하로 아래 (1) ~ (3) 중 적은 금액 이내
 - (1) 임차보증금액의 80%
 - (2)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%
 - (3) KB손해보험의 NICE 및 KCB 점수에 따른 인수기준
 - ※ 단.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

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
- 대출기간 : 10개월이상 25개월이내
 - (단, MOR 연동 24개월의 경우 최저 13개월 이상)
 - 대출만기일: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(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이상 필수)
 - 상환방법: 만기일시상환

대출대상주택

아파트(주상복합 포함)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(구분등기 필수)
 ※ 주거용 오피스텔: 중개업자 물건확인서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'민간임대주택등기'가 되어 있는 경우

대출신청시기

- 대출희망일(잔금일) 30일 전부터 15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약 유형에 따라 아래 대출신청시기를 준용
 - (1) 신규계약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 - (2) 갱신계약: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

금리 및 이율

대출금리

- (1) 기준금리: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「신규취급액기준 COFIX」 또는「신잔액기준 COFIX」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.
 - (2) 가산금리: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 - (3) 우대금리:
 -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: 미운영
 -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(연 0.2%p),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(연 0.3%p)
 - ※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,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.
 - (4) 최종금리: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, 신용등급·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 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조기상환수수료

- 중도상환수수료 : 중도상환원금 × 수수료율(0.59%) × 잔존일수 ÷ 대출기간(최장 3년까지 부과)
 - ☞ 단,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(0.79%) 적용

전세금반환보증

- 보증신청 기한
 - 신규 전세계약 :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/2이 경과 하기 전까지
 - 갱신 전세계약 :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까지
-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% 이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
 - 보증한도=주택가액 x 담보인정비율(90%) 선순위채권
 - 보증한도 산식
 - : [선순위채권 + 전세보증금]은 주택가액이내
 - *주택가액: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
 - 1) 단독, 다가구 주택: 「선순위 채권(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+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)
 - ≤ 주택가액의 80%] 와 [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≤ 주택가액의 60%] 동시 충족
 - 2) 단독, 다가구 주택 외: [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≤ 주택가액의 60%]
- 보증기간
 -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
- 보증조건
 -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
 -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(날인)한 전세계약
 -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
 -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(경매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및 가등기등)
 -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(단독, 다가구의 경우 예외)
 -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
- 보증료
 - 보증료: 보증금액 × 보증료율 ×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/365
 - 보증료율 : 아파트(연 0.128%), 아파트 이외(연 0.154%)
 - *주택의 LTV(선순위채권 +전세보증금)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

연체이자(지연배상금) 에 관한 사항

- ①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
- 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p
- ☞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- 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- ☞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 가 적용되고,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 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☞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-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※ "개인채무자보호법"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 금액 기준)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- 상기 '② 항'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이용안내

닦보

-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
- *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
-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

부대비용

●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1) 인지세: 인지세법」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

대출금액	5천만원 이 하	5천만원 초과 ~1억원 이하	1억원 초과 ~10억원 이하	10억원 초과
인지세액	비과세	7만원 (각각 3만5천 원)	15만원 (각각 7만5천 원)	35만원 (각각 17만5천 원)

- (2) 보증료: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 부담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의 연 0.115% ~ 연 0.154% + 대출금의 연 0.031% (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)
- (3) 보험료: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
-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.
- 보증료는 6개월1년 단위(또는 일시납)로 고객이 부담(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)
- *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.

대출상환 관련 안내

- 이자 계산 방법: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(윤년은 366)로,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-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
 - ※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「상품안내」의 "대출기간 및 상환방법"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(1) 일시상환대출: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,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.
 - (2) 원리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.
 - (3) 원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.
 - (4) 할부금고정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,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
 - (5) 혼합상환: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,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.
 - (6) 통장자동대출: '매일의 잔액'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(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)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.

 휴일 대출 상환: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.(단,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)

기하연장 관련 안내

- 대출만기일로부터 12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까지 신청 가능하다.
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불가하다.
 - (1) 외국인/재외국민 차주
 - (2) 당행 수신계좌 미보유 차주
 - (3) 신용관리 대상자 차주
 - (4)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에 의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
 - □ 영업점에서 기한연장 하는 경우, 해당기준을 따름

상품 가입채널

- * KB스타뱅킹
 - ※ KB스타뱅킹 접속경로: 뱅킹 > 상품가입 > 대출 > 전세/반환보증 > 전월세보증금대출
- 대출신청시간: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능(단, 23:50 ~ 다음날 00:10까지는 전산점검 등으로 신청 불가)

대출계약 철회권

- 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 영업점(콜센터 포함), 모바일 앱,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: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·대출만기 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위법계약 해지권

- 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·계약체결일·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기간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
유의사항 및 기타

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

-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
-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과『일반신 용정보 관리규약』에 따라 "연체정보 등으로"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

2025.01.13~2026.06.30

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

-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,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 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,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
 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-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,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,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으며 대출금의 만 기시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출만기 7영업일 전까지 내점하셔야 하며, 만기일 이후에는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-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,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(P)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(☎1588-9999)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(www.kbstar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.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(www.kbstar.com: 전체서비스 → 고객센터 → 서식/약관/설명서)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
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6049-103호(2025.01.06)]

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

구분	변경전	변경후	기존고객 적용여부
권리보험사 (2024.08.1 6)	현대해상화재보험	KB손해보험	기한연장 시 적용
중도상환수수 료 (2025.01.1 3)	"중도상환원금 × 수수료율 (0.6%) × 잔존일수 ÷ 대 출기간(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) ☞ 단, 금리변동주기와 대 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 수료율(0.7%) 적용"	중도상환수수료: 중도상 환원금 × 수수료율(0.5 9%) × 잔존일수 ÷ 대출기 간(최장 3년까지 부과) ☞ 단,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 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 수료율(0.79%) 적용	미적용

필요서류

- * (1)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(공인중개사 중개 필수)
 - ※ 갱신계약시 (신.구)계약서 모두 제출
 - (2) 중개대상물확인 · 설명서 및 공제증서(공인중개사 교부)
 - (3)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 영수증
 - (4)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분)
 - (5) 임차목적물 건축물대장

- (6) 주민등록표등본(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)
- (7) 주민등록표초본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,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)
- (8)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
- (가) 근로소득자: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- (나) 사업소득자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소득금액증명원 등
- (다) 무소득자: 사실증명원
- (9) 전입세대확인서
- ※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